

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예비심사보고서

2025. 6. 13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제출일자: 2025. 5. 29.(목)
- 회부일자: 2025. 5. 29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
-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일시적인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향후 주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됨.
-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예치금 9,783,474천원 전액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향후 규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임.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이번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,

〈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4년도말 조성액(a)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5년도말 조성액 (e=d+a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기 정	9,783,473	288,613	0	288,613	10,072,086
변 경	9,783,473	288,613	9,783,474	△9,494,861	288,612
증 감	0	0	△9,783,474	△9,206,248	△9,783,474

※ 수입⑥: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 회수 제외)

※ 지출⑦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개정(2025. 2. 21.)으로 적립금 사용제한 한도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예치금 97억 8,347만 4천원을 전액 회수하고,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임.
-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로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른 검토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-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함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